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79호 (사건번호 : 2021조총0082)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내용 및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1.11.17.)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2학년도 시험 감독·운영을 위해 '22. 5. 25.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였다.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기간	보유건수(명)
2022학년도 시험 종사요원 임명 명부 (엑셀 파일)	(필수) 성명, 성별, 경력년수, 출생연도, 휴대전화번호, 기간제 교사 여부, 수험생 자녀·미취학 자녀 유무, 질병명	'21.10.25. ~ '21.11.17.	3,506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시험 감독관() 3,5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성명, 성별, 경력(년수), 출생연도,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건요원 14명의 경우비고란에 기간제교사여부, 수험생 자녀 유무, 미취학자 자녀 유무, 질병명 등항목이 추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	시	유출 인지·대용 내용					
2021.	11. 4.	개인정보 포함 파일을 첨부한 공문을	에 일괄 발송				
		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유출 사실 최초 인지				
		업무 메신져로 166명에게 일부 비공개 처리 요청					
	11.11.	에 '개인정보 보안 철저' 공문 발송					
	11.17.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유출 신고					
	11.18.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1.26.	에 유출 통지 공문 발송(에서 정보주체에게 열람시키도록 요청)					
		직원 상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2022학년도 시험 감독관 및 종사요원 임명 알림' 공문을 에 발송하면서, 구분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명단을 첨부하여 일괄 발송하여 각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일괄 발송한 공문 첨부 파일에는 보건요원 1명의 민감정보(질병명)가 함께 포함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은 '21. 11. 4.에 시험 감독관·종사요원 전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를 공문에 명시하여 일괄 발송한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11. 4.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11. 17.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하였고, 11. 26.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4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3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의 질병명을 포함한 전체 시험 감독관·종사요원의 개인정보 파일을 별 구분없이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를 공문에 명시하여 에 일괄 발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 1)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나, 피심인이 유출 사실을 '21. 11. 4. 인지하고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11. 26.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 등 결과를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유출 사실을 '21. 11. 4. 인지하고도,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11. 17.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8호,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800만 원(각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별표2]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간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따라 기준금액의 50%인 900만 원(각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3조제2항(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5조제2항제6호	600		300	300	
제34조제1항	제75조제2항제8호	600		300	300	
제34조제3항	제75조제2항제9호	600		300	300	
계		1,800		900	900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은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제정) 제2조 (공표요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제4호)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3개의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우	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23조 제2항 / 법 제29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2023. 5. 10.	300만 원	
		법 제34조 제1항	유출 통지 의무 위반		300만 원	
		법 제34조 제3항	유출 신고 의무 위반		300만 원	
2023년 5월 10일 개 인 정 보 보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